- 2)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,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(우)30127
- 3) 팩스: 044-715-7621
- 4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(전화 : 044-205-753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및 소방청 홈페이지 (http://www.nfa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●소방청공고제2020-118호

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19일

소 방 청 장

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A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, 유수검지장 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- 2. 주요내용
 - 가.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(안 제5조제2항제12호)
 - 나.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(안 제6조제4호)
 - 다.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(안 제8조제12항제1호, 제2호)
- 3. 의견 제출
 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참조 : 소방분석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 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 - ※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 - 1) 전자우편(이메일): pwj0117@korea.kr
 - 2)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,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(우)30127
 - 3) 팩스 : 044-715-7621
- 4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(전화: 044-205-753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및 소방청 홈페이지 (http://www.nfa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보

◉소방청공고제2020-119호

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19일

소 방 청 장

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1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

- 2. 주요내용
 - 가.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히도록 함(안 제3조제6호)
 - 나. 경유거실의 배출량 기준을 삭제함(안 제6조제1항제1호)
 - 다.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배출량 기준을 정비함(안 제6조제4항제1호)
 - 라.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(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)
 - 마.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(안 제8조제3항제1호)
 - 바.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기준을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비함(안 제8조제7항)
 - 사.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,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(안 제 9조제2항제1호)
 - 아. 자동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용어를 정비함(안 제11조제2항)
- 3. 의견 제출
 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참조 : 소방분석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 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 - ※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 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wj0117@korea.kr
 - 2)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,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(우)30127
 - 3) 팩스: 044-715-7621
- 4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(전화 : 044-205-753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및 소방청 홈페이지 (http://www.nfa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